

의안 번호	제3549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15일 유영숙, 한종우 의원  
나. 상정일자 : 2024년 12월 13일  
다. 의결일자 : 2024년 12월 16일

### 2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(안 제2조 ~ 제3조)  
나.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(안 제7조)  
다.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 : 생략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생략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